

의안 번호	2152	<b>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</b> <b>검 토 보 고 서</b>
----------	------	---

## 1. 검토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3. 10. 6.(금) 김태욱 의원 외 9명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3. 10. 6.(금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3. 10. 20.(금)

## 2. 제안이유

- 지역 내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지원 등을 확대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정의(안 제2조)
- 나.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(안 제6조)
- 다. 소상공인연합회 지원(안 제13조)
- 라. 고용보험료 지원(안 제14조)
- 마.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(안 제15조)
- 바. 수당(안 제16조)

#### 4. 근거법규: 「소상공인 기본법」 제3조

#### 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 내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지원 등을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전반적으로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# 근거법규

### 소상공인 기본법

- 제3조(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·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.
-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